

기출문제 2009.10.24. 일반직 전환 8,9급

문제는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총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접근방법에서 출제되지 않고 기본문제에 속하는 행정의 위상, 신공공관리론에서 출제되었으며, 정책학에서는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 보았습니다. 조직론 이하는 조직의 기초개념과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기본적 내용, 인사제도와 공직분류, 예산규범과 예산종류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환류에서는 다른 부분과 달리 기초부분이 아닌 내부고발자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지방행정에서는 자치권의 범위와 우리나라 자치제도의 기본틀을 물어 보았습니다.

암기사항이 거의 없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만 되어 있다면 고득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강제명(www.purnn.com, cafe.daum.net/purnn)

01 행정과 경영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공익을, 경영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②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 ③ 행정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규범이 적용되나 경영에서는 고객들 간 차별대우가 허용된다.
- ④ 행정과 경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없는 독점성을 가진다.

정답 ④

행정과 경영은 목적을 위한 관리작용 혹은 인간의 협동적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사하지만, 주체와 목적, 그리고 관리과정 상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은 공공부문의 공익목적의 활동이라면, 경영은 민간부문의 이윤추구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은 강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법적 규제), 이러한 법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평등성). 마지막으로 행정은 독점적 성격이 강하다. ④ 경영은 경쟁성이 강하다(강제명 행정학1, p.46).

구 분		행정(공행정)	경영(사행정)
유 사 점		• 관리기술, 목표달성을 위한 인간의 협동행위, 합리적 의사결정 • 관료제적 성격	
차 이 점	주체 · 목적	• 공공부문 / 공익지향 • 상충적 · 추상적 목표	• 민간부문 / 영리목적
	법적 규제	• 독점 : 낮은 시장노출 / 낮은 경쟁압력 • 강제력 → 법적 제약 • 평등원칙 적용	• 강제력 약함 • 약한 법적 규제 • 평등원칙 적용안됨
	정치 · 권력	• 높은 정치 · 사회적 환경에의 노출 • 공공감시와 통제	• 민주적 리더십
	관할 범위	• 넓은 관할범위, 독점성	• 협소한 영향력 범위, 경쟁적

02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주의보다는 시장기능을 좀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 ② 권한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 ③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출이나 결과가 아닌 투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④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까지 서구 사회에서 국가관료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나타난 문제(부패와 낭비 등 정부실패)에 대해, 정부기능의 감축과,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의 도입과 시장원리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정부혁신운동을 지칭한다.

먼저, 정부기능을 정책의 결정·기획기능(Steering : 방향잡기)과 집행기능(Rowing : 노젓기)으로 분류한다면, 정부는 Steering 기능을 강화하고, Rowing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향에 있어서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을 둔 시장주의와 관리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정신을 살리는 것으로 독점적 정부서비스 제공방식에 경쟁원리를 최대한 도입하려는 것이며, 관리주의는 지나친 내부통제를 감축하여 성과 위주로 행정을 운영하려는 시도이다(강제명행정학1, p.192 이하).

- ② 신공공관리론은 분권화된 조직운동을 주장한다.
- ③ 전통적인 관리방식이 투입에 관심을 가졌다면, 신공공관리론은 산출이나 결과를 중시한다(강제명행정학1, p.200).

03 다음 중 정책결정의 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은?

- ① 국회
- ② 대통령
- ③ 전문가 집단
- ④ 행정부

정답 ③

정답 ④

기계적 구조는 전통적인 관료제적·계층제적 구조를, 유기적 구조는 탈관료제적·수평적 구조를 지칭한다. 전자는 복잡성·공식성·집권성이 모두 높은 형태의 조직이라면, 후자는 낮은 형태의 조직이다(강제명행정학1, p.607).

09 다음 중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엽관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② 엽관제는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엽관제의 확립은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 ④ 엽관제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정답 ③

엽관주의란 공직운영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집권당이 관직을 소속정당원으로 충원하려는 인사제도다. 즉,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임용이 이루어지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엽관제는 영국에서 발전한 정실주의와 비교할 때, 임용권자 개인에 대한 충성도가 아닌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1) 교체임용주의를 내포하며, 정치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2) 신분에 구애되지 않은 인사가 가능하여 공직개방과 공직의 특권계급화를 방지한다. (3) 또한, 최고통치권자에게 인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통치수단 확보가 용이하며, 정당정치 발전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전문성과 능률성 및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정책의 일관성)이 낮아지고 공직의 부패라는 폐해가 문제되면서 실적제가 등장하였다.(강제명행정학2, p.8-9.).

③ 전문성은 엽관제의 단점이자, 실적제의 장점이다.

10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체로 실적주의와 일맥상통한다.
- ② 조직의 안정성보다는 변화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 ③ 내부승진에 의하여 상위직이 충원된다.
- ④ 적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정답 ②

직업공무원제는 전통적 정부관료제에 적합한 인사제도로, 정부관료제에 종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즉, 공직을 보람 있는 직업으로 알고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가 공직에서 성장하고 상위직에 진출하여 전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인사제도이다(강제명행정학2, p.16).

구 분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신분보장	임용이 법이 정한 실적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방어적 · 소극적 의미	젊은 사람이 공직을 본업으로 삼아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적극적 의미
공직구성	개방형 · 직위분류제	폐쇄형 · 계급제
정치적 중립	엽관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적제 본래의 요청	내각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현실적 필요에서 운영(필연적 원칙은 아님)

11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종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인사행
정상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 ① 직류 ② 직급
③ 직군 ④ 직위

정답 ②

설문은 직급에 대한 설명이다(강제명행정학2, p.20).

- (1)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 (2)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
- (3) 직류와 직군 :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보다 유사한 직위의 집단, 직군은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4) 등급(grade) : 직무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동일보수)
- (5) 직급(class ; 직위분류제의 기본 요소) : 직무 성질 · 난이도 · 책임도가 유사하여 인사행정의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12 다음 중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 ① 일반직 ② 특정직
③ 기능직 ④ 정무직

정답 ④

공직은 생애직 개념이 적용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는 전문직업관료 집단인 경력직 공무원과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대별된다(강제명행정학2, p.25).

- (1) 경력직에는 일반직과 (군인, 경찰관, 소방관과 같은) 특정직, 그리고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으로 다시 구분된다. 이때, 특정직에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헌법재판소연구관, 군무원이 포함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